

인천광역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
----------	----

제출연월일 : 2010. 7.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했던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 기준’을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조례 별표 2로 신설 (안 제3조)
- 나.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완(안 제4조)

## □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1부

#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민간 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4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10 (6)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률 - 대손충당금 적립률	24 (7) (7) (6) (4)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2	
3. 시민이용의 편의성		18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8	
	나.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9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5 4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별표 2]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34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4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 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7점)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대손충당금 적립률 (건전성, 4점)

##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점)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라.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 (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점)

-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3. 시민이용의 편의성 (18점)

###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8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나.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9점)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라. OCR센터 운영능력 (4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점)

#####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금고지정 기준) ① (생략)</p> <p>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고,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평가항목별 배점부여기준은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다.</p> <p>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 ⑩ (생략)</p>	<p>제3조(금고지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p> <p>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p> <p>②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p>관계법령</p>	<p>□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p> <p>3. 금고지정 평가기준</p> <p>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lt;별표&gt;의 기준으로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li> <li>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li> <li>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5)</li> <li>라. 금고업무 관리능력(15)</li> <li>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li> <li>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5)</li> </ul> </li> <li>○ &lt;별표&gt;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li> </ul> </li> <li>○ &lt;별표&gt;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li> </ul> <p>4. 금고의 지정절차</p> <p style="padding-left: 20px;">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 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li> </ul> </li> </ul>
-------------	-----------------------------------------------------------------------------------------------------------------------------------------------------------------------------------------------------------------------------------------------------------------------------------------------------------------------------------------------------------------------------------------------------------------------------------------------------------------------------------------------------------------------------------------------------------------------------------------------------------------------------------------------------------------------------------------------------------------------------------------------------------------------------------------------------------------------------------------------------------------------------------------------------------------------------------------------------------------------------------------------------------------------------------------------------

<p>관련 법령</p>	<p>○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p> <p>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li> </ul> <p>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li> </ul> <p>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p> <p>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p> <p>○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p> <p>○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p>
<p>관련 법규 정비대상</p>	<p>“해당없음”</p>
<p>관련자료</p>	<p>“해당없음”</p>